

운석의 소유와 관련한 스웨덴

대법원의 최종판례 분석

-부동산과 동산의 경계 및 점유취득의 현대적 재해석-

Analysis of the Swedish Supreme Court's

Final Judgment on Meteorite Ownership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the Boundary Between

Real Property and Personal Property, and

Occupation-Based Acquisition-

김은경*

Kim, Eun-Kyung

박현숙**

Park, Hyeon-Sook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사건의 개요 및 각 심급의 판단

III. 대법원 판례의 법리적 검토

IV. 운석의 소유권과 관련한 비교법적 접근과

스웨덴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

V. 맺음말

<https://doi.org/10.35148/ilsire.2025..31.167>

투고일: 2025. 10. 15. / 심사완료일: 2025. 11. 14. / 게재확정일: 2025. 11. 19.

* 제1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First Auth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aw School, Dr. iur. Prof

**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스칸디나비아어학과 교수, 언어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Scandinavian Languages, Ph.D. Prof

스웨덴 Enköping 인근에서 2020년 11월 낙하한 철 운석(약 14kg)의 소유권 귀속을 둘러싼 소송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Sveriges Högsta domstolen, T 3007-24, 2025.8.19.)을 거쳐 지난 2025년 8월에 확정되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외부(우주)에서 새로 유입된 운석이 부동산(fast egendom)의 구성요소인지, 또는 동산(lös egendom)으로서 무주물(res nullius)의 점유취득(occupatio) 대상인지 여부이다. 1심은 운석을 주인 없는 동산으로 보아 발견자의 점유취득을 인정했고, 2심은 토지법(Jordabalken)의 ‘땅(jord)’ 개념을 확장해 운석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부동산 소유자에 귀속시켰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을 파기하고 1심을 확정하면서, 운석은 토지의 내재적·영속적 구성요소(점토·자갈·암석 등)가 아니므로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의 인지·지배가 결여된 이상 점유가 성립하지 않아 발견자의 점유취득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리적으로 부동산과 동산 경계를 토지의 내재성·영속성 기준으로 재확인하고, 점유취득의 고전 원칙을 현대적 사안(천체기원 물체)에 적용했다. 특히 공공접근권(Allemansrätten)은 자연 이용의 자유를 보장하되 소유권 귀속의 직접 근거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Anders Eka)으로 운석을 낙하 즉시 부동산화하여 토지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도 예외주시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이 반대의견에 대하여 이는 물리적 결합·영속성 요건과 점유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본 판결과 관련하여 발견자 귀속이 탐사·신고·연구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반면, 고가 운석의 투기·무단 반출위험을 수반하므로, 발견자에게 보상하고 이 운석에 대한 공공 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 운석에 대한 신고·등록제의 혼합 설계를 제안한다. 국제통상 측면에서는 소유권 기준의 명확화가 국제 거래·보험·운송·연구 협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비교법적으로도 독일, 스위스, 일본 민법의 무주물 점유취득의 일반원칙과 합치하며, 토양과의 실질적 결합이 없는 한 동산으로 인정하는 유럽 대륙법의 경향과 궤를 같이한다고 본다. 해당 사건에서 보여주는 각 심급의 판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주 시대의 연구와 관련한 과학적 연구에 대한 지원제도와 공익적 보존 간의 균형 있는 규범 설계를 더불어 제안하는 바이다.

[주제어] 운석소유권, 부동산, 동산, 무주물선점, 공공접근권, 스웨덴 대법원

I. 들어가는 말

2020년 11월 스웨덴 Enköping 인근에서 발생한 운석 낙하 사건은, 토지 위에 새로이 형성된 물체의 소유권 귀속이라는 전통적인 물권법적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였다. 사건의 핵심은, 우주에서 지구로 유입된 물체인 운석이 토지의 일부로 귀속되는가, 아니면 독립된 동산으로서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에 있었다. 약 14kg의 해당 운석을 발견한 두 명의 지질학자와 토지의 수익권자 Refvelsta Godsförvaltning AB(이하 “Refvelsta”)가 운석의 소유권 귀속을 다툰 사건은 부동산과 동산의 경계, 점유취득(occupatio), 공공접근권(Allemansrätten)의 상호관계를 총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사건은 1심에서 발견자에게 소유권을, 2심¹⁾에서는 토지측 소유자 또는 수익권자에게 운석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가, 스웨덴 대법원²⁾에서 발견자 승소로 종결되었다.

스웨덴 법체계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을 「토지법(Jordabalken)」 제1장 및 제2장에 따라 설정하고 있으며, 점유취득(occupatio)의 일반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석과 같이 천체기원의 물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스웨덴 사법상 최초로 “외계 기원의 물체”에 대한 소유권 귀속을 판단한 판례가 되었다.

선행연구³⁾에서 운석을 “자연산물이나 광물과 달리 인위적 생산물과 무관한 천체기원의 독립된 물체”로 파악하고, 발견자에게 점유취득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그 연장선상에서, 2025년 8월 19일 선고된 스웨덴 대법원판결⁴⁾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의 전개와 법리

1) Svea hovrätt, 2024. 3. 21, T 835-23.

2) 스웨덴 대법원(Högsta domstolen)이 2025. 8. 19. 선고한 최종판결(사건번호 T 3007-24).

3) 김은경/박현숙, “운석의 소유와 관련한 판례분석과 해당 논의에 관한 법적 소고 -스웨덴 고등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일감부동산법학 제29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182-237쪽.

적 의미를 분석하고, 한국법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사건의 개요 및 각 심급의 판단

1. 사실관계

2020년 11월 7일, Enköping 외곽의 한 농지에 운석이 낙하하였다. 해당 부지는 Refvelsta Godsförvaltning AB(이하 “Refvelsta”)가 수익권을 가지는 토지였다. 두 명의 지질학자 A.F.와 A.Z.는 2020년 12월 5일 탐사 중 약 14kg의 철 운석을 발견하여 스웨덴 자연사박물관(Naturhistoriska riksmuseet)에 예치하였다. Refvelsta는 “운석은 토지의 일부이며, 따라서 자신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1.1 배경

1. 2020년 11월 7일, 운석 낙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한 운석이 J.B.가 소유한 Enköping 외곽의 한 토지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J.B.가 전적으로 소유한 회사인 Refvelsta Godsförvaltning AB는 계약에 따라 해당 토지가 생성하는 모든 수익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J.B.와 Refvelsta는 이 계약상 권리가 토지 위에 떨어진 운석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2. 두 명의 지질학자 A.F.와 A.Z.는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해당 토지에서 운석을 찾고 있었다. 2020년 12월 5일, 그들은 약 14kg의 철 운석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몇 달 후 운석을 스웨덴 자연사박물관(Naturhistoriska riksmuseet)에 맡겼으며, 예치/대여 계약에 따라 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4) Sveriges Högsta domstolen, 2025. 8. 19, Dom T 3007-24.

3. Refvelsta는 본 운석에 대한 우선권(더 나은 권리)을 주장하며 A.F.와 A.Z.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은 이 청구를 기각하였다. 지방법원은 운석이 소유자가 없는 동산(lös egendom)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발견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갈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운석을 점유함으로써 그들은 해당 운석의 소유자가 되었다.

4. 고등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변경하고 Refvelsta의 주장을 인정/인용하였다. 고등법원은 운석의 발견 당시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Refvelsta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고등법원에 따르면, 발견자들은 공공접근권(Allemansrätten)이나 그 외의 관행이나 관습에 근거하여 운석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1.2 당사자 주장

지질학자인 A.F.와 A.Z.는 새로 떨어진 운석은 동산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소유권은 발견자인 자신들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차선으로, 설령 운석이 그것이 떨어진 토지(부동산/fastighet)의 일부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공접근권(Allemansrätten) 또는 그 외의 독립적인 관습에 근거하여 운석을 가져갈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1938년 유실물법(1938:121) 제9조에 따라, 운석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들과 상대방이 절반씩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부동산 소유자인 Refvelsta는 운석이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는 운석이 부동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Refvelsta에게 귀속된다. 만약 운석이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소유자 또는 권리자가 토지에 대한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가지는 자연산물(naturprodukt)로 소유권은 Refvelsta에게 귀속된다. 마지막으로, Refvelsta가 운석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점유를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1.3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특정 토지에 떨어지고, 토지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내지 권리승계인)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간 운석에 대한 우선권 문제를 다룬다. 주된 쟁점은, 운석이 떨어진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산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2. 각 심급의 판단

2.1 지방법원 판단

지방법원은 운석을 무주물의 동산(lös egendom)으로 보았다. 토지소유자나 Refvelsta는 운석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점유가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최초 발견자들이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고전적 점유취득 원칙(occupatio)에 충실한 판단이었다.

2.2 고등법원 판단

항소법원⁵⁾은 이를 뒤집어, 운석을 토지의 일부로 보았다. 「토지법」 제1장 제1조 및 제2장 제1조에 따라 “토지(jord)”의 개념은 점토·암석·자갈 등 모든 구성물질을 포함하며, 운석이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이상 이는 토지의 구성요소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한 공공접근권(Allemansrätten)은 토지 이용의 제한적 권리일 뿐, 경제적 가치의 채취권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발견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Svea hovrätt, 2024. 3. 21, T 835-23.

2.3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항소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지방법원 판결을 확정하였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다.

운석은 외계에서 유입된 독립된 물체로, 토지의 기본 구성요소에 포함될 수 없다. 즉 운석은 토지와 독립된 동산으로서 점유취득이 인정된다. “토지”의 개념은 점토, 자갈, 암석 등 토지 내재적 요소에 한정된다. 토지소유자는 운석의 존재를 알거나 통제하지 않았으므로 점유가 부정된다. 운석은 “무주물(res nullius)”이며, 최초 발견자의 점유로 소유권이 창설된다. 공공접근권은 단순한 통행·체류·소규모 자연물 채취의 자유에 그치며, 고가의 천체기원 물체의 소유를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그 한계가 있다.

종국적으로 운석은 부동산의 일부가 아닌 동산이며, 발견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다만 반대의견으로 Anders Eka 대법관은 “운석은 낙하 순간부터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토지 가치가 우연하게 증가하는 것은 부동산법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Ⅲ. 대법원 판례의 법리적 검토

1.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

스웨덴 「토지법(Jordabalken)」 제1장 제1조에 따르면,⁶⁾ 부동산은 토지(jord)이며, 제2장 제1조에 의해 부동산의 부속물(fastighetstillbehör)은

6) 이하의 법리적 검토는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Sveriges Högsta domstolen, 2025.

8. 19, Dom T 3007-24)에서 제시된 논거를 정리한 것이 주를 이룬다.

“지속적 이용을 위한 건물, 수목, 식생 등 물리적으로 토지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된다.⁷⁾ 운석은 외부에서 새로이 떨어진 물체로서 토지의 영속적 구성요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토지부속물로서의 성격을 부정하고, 동산으로 취급한 대법원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조문 체계에 부합한다.

부동산과 동산의 경계에서 법률에서 무엇이 부동산(fast egendom)이며, 무엇이 부동산(fastighet)⁸⁾의 부속물인지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이러한 규정은 토지법(Jordabalken)에 명시되어 있다. 그 외의 모든 자산은 동산(lös egendom)이다. 토지법 제1장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땅은 자연적 의미의 토지 전체(jord)와 부동산(fastigheter)으로 나뉜다. 즉 토지(jord)란 물리적 토지 그 자체로서 후자인 부동산(fastigheter)을 구성하는 기초로서의 자연적 토지의 총칭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부동산(fastigheter)은 등기부에 명시된 법적 단위로 등기된 토지구획을 말한다. 예비입법서에 따르면,⁹⁾ 토지(jord)라는 개념은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토지가 표토, 점토, 암석, 자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또한 지표면이 건조한 땅인지, 물로 덮여 있는지에 관계없이 지표면의 모든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지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구성 요소들도 원칙적으로 토지 개념에 포함되고 토지의 일부를 구성한다. 더욱이 동법 제2장에 따르면, 땅과 특별한 -직접적인 (more or less direct)- 연관성으로 일부 특정 사물은 부동산의 부속물(fastighetstillbehör)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동장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예를 들어, 특히

7) 정부제출안(이하 prop.). 1966:24, s. 56.

8) 토지법 제1장 제1조는 “부동산은 토지이다(Fast egendom är jord)”. 동장 제2조는 “스웨덴의 모든 토지는 부동산 단위로 구획되어 있다(Sveriges jord är indelad i fastigheter)”. 그러므로 스웨덴에서 부동산(fast egendom)은 실제로 하나 이상의 fastighet의 집합이다. 각 fastighet는 등기번호(등록지명+번호)로 식별되고, 이는 토지뿐 아니라 그 위에 건물, 수목 등 부속물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fastighet는 매매, 상속, 담보권 설정 등의 법적 행위 단위가 된다.

9) prop. 1966:24, s. 58; NJA II 1896, s. 2 이하; prop. 2004/05:40, s. 61 이하 참조.

지속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토지에 세워진 건물은 그 건물을 설치한 자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전제하에 부속물로 간주된다(제4조 참조). 또한 “뿌리가 붙은 나무 및 기타 식물”과 자연비료도 토지부속물이다. 이러한 부속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물이 외형적으로(물리적으로) 토지와와의 연결을 전제로 한다.¹⁰⁾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토지와 관련이 있고, 일반적으로 영속적인 성질을 가지며, 그로 인해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것을 부동산에 포함시킨다.¹¹⁾ 그러므로 토지에 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 소유권의 대상이다.¹²⁾

부동산과 동산의 경계를 설정할 때, 재산법상 서로 다른 법규의 적용을 받고 그 경계가 특정 자산의 신용 평가에 어떠한 자산이 포함되는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부동산과 동산 간 경계가 명확하고 실제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이한지 여부가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¹³⁾ 무엇이 부동산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외부적인, 그러나 관찰 가능한 상황 및 조건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기는 하다. “Slaggarpet”사건¹⁴⁾에서 오랫동안 토지에 놓여 있던 구리 잔재물(slaggarpet)이 부동산의 일부인지가 문제된 바 있었는데, 대법원은 문제가 된 현상이 그간의 형성된 과정으로 볼 때 구리 잔재물과 그것이 놓여 있는 땅이 하나의 자연적 단위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당해 건에서의 구리 잔재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었다.

10) prop. 1966:24, s. 13 och 56.

11) prop. p. 64 참조.

12) “Skattefjällsdomen” NJA 1981 s. 1 och s. 244 이하; Bertil Bengtsson, *Sakrättsliga frågor i fastighetsrätten 6 uppl.*, Johanneshov, 1991, s. 19 이하 참조.

13) prop. s. 5 및 56; Torgny Håstad, *Sakrätt avseende lös egendom 6 uppl.*, Norstedts Juridik, 2000, s. 29 이하 참조.

14) NJA 1959, s. 466.

2. 점유취득의 요건

스웨덴 민사법상 점유취득은 ‘무주물의 점유에 의한 소유권 창설’을 인정한다. Håstad는 “직접적 지배 및 통상의 인식 가능성”을 점유의 요건으로 본다.¹⁵⁾ 본 사건에서 토지수익자인 Refvelsta는 운석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점유 의사가 없었으며, 지배력도 행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발견자인 지질학자들이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소유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면, 어떤 사물이 명백히 한 사람의 직접적인 지배·통제 아래 있거나, 적어도 통상적인 관례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위치나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 그 사람이 해당 사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소유자나 임차인이 처분 또는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위에 있는 사물은, 그 물건의 위치가 대체로 정상적이고 사물이 특정 구역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다면, 이는 그들의 점유에 속하는 것이다. 아무도 소유하지 않았고,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사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물을 가져갈 권리가 있으며, 이를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¹⁶⁾

3. 공공접근권(Allemansrätten)의 범위

공공접근권은 스웨덴 헌법(Regeringsformen) 제2장 제15조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민의 자연을 이용할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이는 “타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의 이용”에 한정된다. 운석은 경제적·과학적 가치가 큰 천체물로, 일반적 자연산물(야생화·버섯·자갈 등)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공공접근권의 범위로

15) Torgny Håstad, *a.a.O.*, s. 43.

16) Torgny Håstad, *a.a.O.*, s. 43.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동법 제2장 제15조 제4항에는 모든 사람이 공공접근권(Allemansrätten)에 따라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권리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¹⁷⁾

공공접근권(Allemansrätten)은 예컨대 도로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고, 비교적 짧은 기간 그 토지에 머무르며, 또한 그곳에서 일부 자연산물을 채취함으로써, 누구나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관습에 의한 제한적 권리로 설명될 수 있다. 다만 공공접근권의 일반적인 경계는 그 이용이 토지소유자나 다른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해나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 있다. 물론 Allemansrätten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어떠한 법률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범위는 상당 부분 특정 형사 규정, 특히 산림이나 땅에서의 절취 행위,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반대해석함으로써 도출된다. 동시에 Allemansrätten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타인의 토지에서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형사 규정은 금지되는 행위의 전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행위는 비록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¹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llemansrätten에는 누구나 숲과 땅에서 일부 자연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그러나 일부 자연산물의 채취는 형법 제12장 제2a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숲과 땅에서 “자라는 나무나 풀, 바람에 쓰러진 나무, 돌, 자갈, 이탄 또는 기타 가공되지 않은 것”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자라는 나무에서 “가지, 나뭇가지, 자작나무 껍질, 나무껍질, 잎, 섬유질, 도토리, 견과류, 송진”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손괴(åverkan)로 간주된다. 이러한 산물의 절취가 경미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8장에 따른 절도죄 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 또한 재배된 산물, 예를 들어 재배된 꽃을 채취하는

17) prop. 1993/94:117, s. 18 이하.

18) “Forsrännigen” 사건, NJA 1996 s. 495.

것은 전면 금지되며, 절도죄로 판단된다. 그러나 손괴 내지 훼손(åverkan)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숲과 땅에서 해당 조항에 명시된 것 이외의 자연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석된다. 특히 야생 베리, 야생 꽃과 약초, 버섯, 솔방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자연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Allemansrätten에 따라 누구나 이를 채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스웨덴의 강한 전통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러한 산물들이 토지소유자에게 본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나 채취할 수 있는 자연산물도 상당한 시장 가치를 지닐 수는 있다.¹⁹⁾

비록 형법 제12장 제2a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에 나열된 여러 자연산물에 대하여 소량 채취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누구나 소량의 돌이나 풀을 가져가는 것은 허용된다. 또한 광물 탐사 시 시료를 채취하는 것도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나 불편을 끼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허용된 채취와 허용되지 않는 채취의 경계는 정해져 있지 않다. Allemansrätten에 따라 어떤 자연산물을 어느 정도까지 채취할 수 있는지는, 그로 인해 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채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현장의 상황이나 조건이 어떠한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땅이나 그 밖의 식생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채취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⁰⁾

4. 운석에 대한 법적 판단

운석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여 감속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뎌낸 우주 암석을 말한다. 운석은 높은 과학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긴다. 운석은 특히 태양계 내 물리적 과정, 행성과 소행성이 어떻게 형성

19) “이끼(Vitlaven)” 사건, NJA 1986 s. 637; prop. 2016/17:131 s. 41.

20) ”길가의 돌 사건”, NJA 1874 s. 115; ”이끼 사건”, NJA 1986 s. 637 참조.

되었는지, 운석 낙하가 지구의 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연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운석은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닐 수도 있다.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운석은 일반적으로 암석에 해당하는 운석이다. 사실상 철 운석은 발견된 것을 중심으로 약 5%에 불과할 만큼 드물다. 지구의 물로 인해 운석은 빠르게 부식된다. 습한 환경에서는 부서지기도 쉽다. 일부 운석은 다른 운석보다 더 오래 보존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막과 같은 일부 환경은 다른 환경보다 운석의 보존에 더 유리한 조건이다. 사건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된 운석을 포함하여 스웨덴에는 14건의 알려진 운석 낙하 사례가 있다.²¹⁾ 또한 운석 탐사에 적극적이고 운석을 추적하는 방법을 개발한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운석 낙하는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는다.

현재 운석의 소유권을 규정하는 스웨덴 법률이나 기타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운석을 발견한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는 어떠한 조문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운석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운석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무엇이 부동산을 구성하는지에 관한 규정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이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토지부속물을 구성하는 것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을 구성하는 것은 열거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운석은 토지부속물로 간주될 수 없다. 운석이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려면, 그것이 땅의 기본요소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을 구성하는 것은 해당 토지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지속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²²⁾

토지(jord)라는 개념에는 점토, 돌, 자갈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토지 위에 있는 이러한 종류의 물질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일부이다.

21)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선행연구인 김은경/박현숙, 앞의 논문, 199쪽 4.2. 운석에 관한 관습법 항목을 참조할 것.

22) “Skattefällsdomen”, NJA 1981 s. 1 och s. 244 이하; Bertil Bengtsson, *a.a.O.*, s. 19 이하 참조

그러나 그 물질이 놓여 있는 토지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일부라고는 할 수는 없다. 운석이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결정적인 것은, 운석이 우주에서 온 독특(unik)한 물체이며 또한 운석의 재질과 특성이 어떠한지에 따른다. 운석은 암석이나 부동산의 기본요소를 구성하는 여타의 물질과는 다르다. 비전문가가 운석과 일반 돌을 항상 구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료를 채취한 후 해당 물체가 운석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

종합하건대 운석의 소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운석은 떨어진 부동산의 기본요소가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운석이 토지에 통합되어 일부가 되고, 그것에 기초하여 운석이 있는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막 떨어진 운석이라 하더라도 땅과 즉시 결합되어 통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한 상황-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이 운석이 부동산의 부속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중요하다.²³⁾ 결과적으로 운석이 부동산과 통합 내지 일체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산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발견자는 동산을 구성하는 운석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²⁴⁾

5. 사안에 대한 판단

5.1 종합적인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의 조사에 의하면, 운석은 문제된 토지의 바위 표면 위에 이끼가 덮인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운석은 최근에 낙하되었고, 쉽게 접

23) “Slaggarpet” 사건, NJA 1959 s. 466.

24) Torgny Håstad, *a.a.O.*, s. 43.

근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운석은 땅과 일체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운석은 동산을 구성하였다. 이는 운석의 경제적 가치가 작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토지소유자나 Refvelsta에서 일하는 누구도 운석을 발견했다거나, 그 토지에 운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운석이 발견될 당시 토지소유자나 Refvelsta의 점유에 속했다고 볼 수 없다. 사건에서 주장된 것에 따르면, 운석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고,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았으므로, 발견자는 운석을 가져갈 권리가 있었다. 이러한 전제하에, 발견자는 운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²⁵⁾

5.2 반대의견의 근거

대법관 Anders Eka는 반대의견으로 항소법원의 판결과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한 의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수와 마찬가지로 운석의 소유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입법이나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운석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다수가 주장하듯이, 무엇이 부동산과 동산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구분에서 출발해야 한다. 반대견해에 따르면 무엇이 부동산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토지법(jordabalken)의 규정이 제1장 제1조에서 사용된 토지(jord)라는 개념이 넓은 의미로 이해되고 또한 지표면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는 진흙, 돌, 자갈 등을 포함한다. 원칙적으로는 지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광물이나 기타 물질도 역시 포함된다. 낙하된 운석은 외형상 특히 돌과 유사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일정 기간 동안 땅 위에 놓여 있었던

25) Torgny Håstad, *a.a.O.*, s. 43.

경우, 특별한 지식을 갖추지 않은 관찰자의 눈에는 운석과 땅에 있는 다른 사물들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운석은 지표면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운석이 -자연의 힘에 의해 한 토지에서 다른 토지로 이동하는 다른 자연 물질들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면에 떨어진 순간부터 이미 부동산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운석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어떤 운석은 무게와 크기 때문에 발견된 장소로부터 쉽게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운석은 너무 크고 무거워 전혀 옮길 수 없거나 기계적인 힘을 사용해야만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떨어진 운석이 무주물인지 아니면 그것이 떨어진 소유지의 일부인지를 이동의 용이성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것 같지 않다. 또한 운석이 땅 위에 얼마나 오랫동안 놓여 있었는가에 결정적인 의미를 두어서도 안 된다. 운석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어느 정도 그 환경에 통합되어 일체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유리한 조건에서는 운석이 땅에 떨어진 후에도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토지 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적어도 이러한 종류의 것들이- 그 어떤 소유자도 없이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떨어진 운석의 소유권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거로서, 그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에게 생기는 가치가 단지 우연과 무작위적 상황의 결과일 뿐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치가 상당할 수 있는 운석은 사건과 관련된 장소가 아닌 다른 토지 위에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물론 이 논리에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이러한 우연이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토지소유자나 다른 사람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광물자원이나 기타 자원이 발견되어 예상치 못하게 토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사건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운석이 발견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동산으로 간주될 경우 연구 목적을 위해 운석에 접근하기 유리하다는 주장 또한 -항소법원이 지적했듯이- 현재 진행되어야 할 평가나 판단에서 어떤 중요성도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운석이 떨어진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운석은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에 포함된다.

항소법원에서 밝혔듯이, *Allemansrätten*은 지질학자들에게 운석을 전유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그러한 권리는 관행이나 관습을 따른 것도 아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운석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5.3 소결

운석의 소유권이 발견자에게 있는 것인지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한 스웨덴 대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 동일한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운석의 소유권을 발견자에게 인정함에 있어서 우주물선점의 이론과 함께 발견자가 운석을 발견하기까지 기여도를 동시에 인정하여 그 소유권을 인정함이 마땅하다고 보았다.²⁶⁾

운석은 우주로부터 낙하된 유성체로서 그 스스로가 생명력이 있어서 움직인 것이 아니고 천체의 공기 저항력, 그리고 지구의 중력 및 천체로부터 최초 움직임이 일어나 지구로 오는 동안에 붙는 속도로 인하여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지구의 어느 지역에 떨어지는 것으로써 그 누구에 의하여 전달된 것이 아닌 유형물에 해당한다.²⁷⁾ 그러므로 그 자체가 낙하된 토지의 부속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일 토지의 부속물이라면 그 자체가 독립성이 없이 토지에 결합된 것인 부합

26) 김은경/박현숙, 앞의 논문, 181쪽 이하.

27) 김은경/박현숙, 위의 논문, 223-224쪽.

물에 해당하고,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면 그 부합물의 경제적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된다²⁸⁾는 논거에 의하면 해당 사건의 운석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그 운석의 경제적인 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운석 자체가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역시 가치는 부동산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와 같은 가치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해당 사안에서 발견된 운석은 운석이 있던 부동산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주인 없는 동산으로 놓여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도 발견자는 운석의 낙하속도와 낙하지점을 추적하여 발견한 것으로서 발견자의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점유의 의사가 충분히 추론된다. 단순히 특정 토지에 낙하하였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당연히 운석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당위적 판단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발견자의 점유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여기에서는 별론으로 한다. 무주물의 귀속을 선점이라는 것으로 규범적으로 접근하는 민법의 일반원칙을 존중하여 운석은 무주물로서 점유취득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IV. 운석의 소유권과 관련한 비교법적 접근과 스웨덴 대법원 판례의 시사점

1. 개요

운석의 귀속은 전통적으로 두 갈래 해석 틀의 경합으로 수렴한다. 첫째, 무주물(res nullius)에 대한 선점(occupatio) 원칙에 따라 누구의 점

28) 박윤직/김재형, 물권법, 박영사, 2024, 282쪽; 김준호, 물권법, 법문사, 2020, 191쪽; 박동진, 물권법강의, 법문사, 2022, 230쪽;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22, 638쪽;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

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은 최초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창설된다. 반면 두 번째로 부합(*accessio*) 또는 부동산의 부속 원칙에 따르면 외부 물체라도 토지에 물리적·기능적으로 일체(*integration*)가 되면 그것은 토지의 일부가 되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스웨덴 판례에 따르면 여기에 ‘임베드(*embeddedness*)-지배가능성(*possessio*)-시간경과’ 요소를 결합하여, (i) 기원성(천체기원·외부유입),²⁹⁾ (ii) 일체화 정도(물리적 결합·분리 비용/손상), (iii) 점유·인지의 존재(토지 측의 사실상 지배와 인식), (iv) 공익가치(과학·문화재)의 네 축으로 판단한다.

스웨덴 대법원은 본 건에서 외부 유입·일체화 부재·토지측 점유 부정을 들어 동산성·발견자 점유취득을 인정하였다. 여기에서 기원성은 해당 운석이 천체를 기원으로 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온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더욱이 토지법에 따라 토지와 그 부속물은 내재성과 영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토양, 자갈, 암석 등 기본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³⁰⁾ 두 번째 일체화 정도는 소위 토지와 부속물 간의 일체성 및 부합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는 독일 민법과 같이 무주물은 선점의 대상이고 토지에 부속 내지 부합의 문제는 분리비용과 손상의 정도를 판단하여 그 귀속의 결정을 해야 한다.³¹⁾ 이때 토지에 매몰되고 부착된 정도에 따라 운석이 토지의 일부로 본 판례가 있다.³²⁾ 다만 운석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토지에 부착된 물건의 일체화 및 부합 정도를 판단하는 실례를 다룬 판례가 있기도 하다.³³⁾ 특히 이번 스웨덴 대법원 판례에서 낙하 운석의 경우 발견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 가장 중요한 근거로 운석에 대한 점유 및 인지의 존재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29) Sveriges Högsta domstolen, 2025. 8. 19, Dom T 3007-24.

30) Jordabalken 1 kap. 1 §; 2 kap. 1 §; prop. 1966:24.

31)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80. Aufl.*, C.H.beck, 2021, §958; §946 ff.; §905.

32) 미국의 판례로 *Goddard v. Winchell*, 52 N.W. 1124 (Kan. 1892).

33) 영국의 판례로서 *Elwes v. Brigg Gas Co*(1886) 33 Ch D 562 (지중 보트 → 토지소유자 귀속); *Waverley BC v. Fletcher*[1996] QB 334 (땅에 매몰·부착된 물건은 토지 귀속).

발견자의 운석에 대한 지배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점유는 사실상 지배와 인지가능성의 결합에서 가능한 것임을 확인하였다.³⁴⁾³⁵⁾ 마지막 판단요소로 공익가치에 관한 것이며 공익성은 주로 공법적인 관점에서 보완되는 축이다. 이에는 유네스코 국제규범인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협약)과 문화재 수출 및 수입을 제한하는 EU 규정³⁶⁾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취지의 입법과 판례가 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기본이 되는 입법례를 대륙법 체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2. 비교법적 고찰

2.1 독일과 스위스 입법과 그 적용

독일 민법(Bürgerliches Gesetzbuch; BGB) 제958조는 “소유자가 없는 물건은 점유하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소위 무주물선점을 명시하는 규정이다. 학설은 천체물 역시 ‘무주물’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단 운석이 이미 토양에 흡수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부로 본다.³⁷⁾ 판례 및 다수설은 운석을 외부에서 새로 유입된 동산으로 파악하여, 토양에 실질적으로 편입(깊이 매몰·분리 시 과도한 손상·토지의 기능 일부가 됨 등)되지 않는 한 발견자 선점을 긍정한다. 즉 운석은

34) 동일한 취지의 견해로 Torgny Håstad, *a.a.O.*, s. 43.

35) 동일한 취지의 영국판례로는 *Armory v. Delamirie*(1722) 1 Strange 505; 93 ER 664 (발견자의 점유권 우선); *Parker v. British Airways Board*[1982] QB 1004 (관리자가 합리적 통제를 행사한 경우 우선권); *South Staffordshire Water Co v. Sharman*[1896] 2 QB 44 (토지·수면 지배자가 수중 발견물에 우선).

36) Regulation (EU) 2019/880(문화재 수입) 및 Council Regulation (EC) No 116/2009 (문화재 수출); UK Treasure Act 1996 /Portable Antiquities Scheme (고고학적 발견물의 공공보존·보상 메커니즘) 참조.

37) Palandt, *a.a.O.*, §958 Rn. 3.

하늘에서 떨어질 때 누구의 소유도 아니므로 무주물이며, 따라서 민법 제958조 제1항에 따라 최초로 이를 점유한 자가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³⁸⁾ 물론 이때 동조 동항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 가능성을 주장하면서도 보물에 관한 동법 제984조를 유추적용 가능성과의 결합문제도 병렬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³⁹⁾ 반면 장기간 매물로 지층과 구별이 어렵거나 분리 시 토지의 현저한 훼손을 수반하면 부합을 인정하여 토지소유자 귀속으로 전환한다.⁴⁰⁾ 이는 ‘일체화-분리 가능성-손상 비용’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전제로 하며, 스웨덴 대법원의 접근과 구조적으로 합치한다.

스위스 역시 일반적으로 동산 점유취득 일반원칙이 확립되었고 이것이 운석에도 준용되는 경향이 있다. 스위스 민법전(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ZGB) 제 718조는 “무주의 동산은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 점유취득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동법 제724조⁴¹⁾는 “과학적 가치가 있는 무주의 자연물(Naturkörper) 또는 고고학적 유물(Altertümer)은 발견

38) LTO, Philipp Feth, “Wem gehören Meteoriten?”, 29. 1. 2024, <https://www.lto.de/recht/hintergruende/h/meteorit-meteoroid-weltraum-eigentum-aneignung-fund-schatz-schatzfund?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 10. 12.

39) Prütting/Wegen/Weinreich, *BGB Kommentar 20. Auflage*, Wolters Kluwer, 2024, § 958 BGB, S. 4176; Thomas Hoeren/David Kästle-Lamparter/Philip Mayer, *Anspruch der B gegen E auf Herausgabe des Meteoritenstücks gem. § 985 BGB-Zwischenprüfungsklausur Sachenrecht/Gesetzliche Schuldverhältnisse: Der kostbare Weltraumschatz*, ZJS, 6/2024, S. 1185 ff;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 958 Eigentumserwerb an beweglichen herrenlosen Sachen”, <https://www.gesetze-im-internet.de/bgb/_958.html>, 검색일: 2025. 10. 2.

40) ZJS 6/2024.

41) Art. 724 1. Herrenlose Naturkörper oder Altertümer von wissenschaftlichem Wert sind Eigentum des Kantons, in dessen Gebiet sie gefunden worden sind. Ohne Genehmigung der zuständigen kantonalen Behörden können solche Sachen nicht veräußert werden. Sie können weder eressen noch gutgläubig erworben werden. Der Herausgabeanspruch verjährt nicht.

된 주(州, Kanton)의 소유”라고 선언한다.⁴²⁾ 또한 “발견자와 매장물의 경우 소유자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물품의 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⁴³⁾ 스위스 민법에 따르면 운석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과학적으로 흥미로운 자연물”로서 운석이 발견된 주에 속하게 된다. 이때 발견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발견된 운석의 해당 주 자연사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에 보관된다.⁴⁴⁾ 그러므로 스위스의 경우는 그 관점이 과학적 가치가 비교적 낮은 일반 파편의 운석은 민법 제72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운석조각으로 일반 점유취득의 원칙을 적용하는 반면, 과학적 가치가 있는 운석으로서 공인 등재가 되거나 학술표본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724조에 따라 특별법적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물건은 관할 주 당국의 허가 없이는 양도할 수 없고, 점유취득(Ersitzung)이나 선의취득(gutgläubiger Erwerb)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반환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일련의 조문 구조 때문에, 운석과 같이 과학적 가치가 명백한 자연물은 원칙적으로 사법상 사적 소유로 흡수되기 전에 공권적 장치로 공공 소유(주 귀속)로 포섭된다. 이 규범을 뒷받침하는 연방대법원 판례⁴⁵⁾가 자주 인용된다. 해당 판례에 따르면 문화재·고고학적 유물의 이동·처분에 대한 주의 허가 요건 등을 공익 보호의 범주에서 정당화하며, 민법 제724조에 기초한 주의 지배·관리 권능을 폭넓게 인정하는 흐름에 선다. 즉 고고학적 대상이지만 “무주의 과학적 가치 물건”이라는 공통분모에서 운석과 동일한 법리 틀에 들어간다.

42) 이하는 김은경/박현숙, 앞의 논문, 212쪽에서 기술한 스위스 부분에 덧붙여 그 당시 부족한 연구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한 것임.

43) 관련 판례로는 Federal court decision 113 IA 368 from Dec. 23, 1987(BGE 113 Ia 368(1987.12.23.)).

44) Drei neue Schweizer Meteoriten entdeckt, “Institut für Geologie”, 18. 10. 2018, <https://www.geo.unibe.ch/ueber_uns/medien/medienmitteilungen/181002_meteoriten/index_ger.html>, 검색일: 2025. 10. 2.

45) Federal court decision 113 IA 368 from Dec. 23, 1987(BGE 113 Ia 368(1987.12.23.)).

발견자 보상과 박물관의 보관은 주의 운용 지침에서 구체화된다. 예컨대 베른 주(Kanton Bern)의 공식 ‘지침(Weisung Umgang mit herrenlosen Naturkörpern von wissenschaftlichem Wert; Weisung)’은 민법 제724조를 전제로 “과학적 가치가 있는 무주의 자연물은 주의 소유”이며, 주는 이를 연구, 교육 및 전시 목적에 따라 과학기관·대중에 접근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힌다. 또한 ‘지침’은 운석(Meteoriten)을 자연물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면서, 과학적 가치 판단 기준과 ‘보상(Entschädigung)’의 취지를 별도로 안내한다. 나아가 베른 시민자치 자연사박물관(Naturhistorisches Museum der Burgergemeinde Bern)에 문서화·평가를 위한 제시의무를 적시하여 박물관 중심의 수집·보존 루트를 제도화하고 있다. 여러 주의 집행규정도 같은 체계를 반영한다. 예컨대 장크트갈렌 주(Kanton St. Gallen)은 자연물·유물 보호령에서 “과학적 가치가 상당한 경우(‘erheblich’)의 무주의 자연물·유물은 민법 제724조에 따라 주 소유”임을 재확인하고, 운용 절차를 둔다. 또한 아르가우 주(Kanton Aargau)의 법제는 예외적으로 정부 동의하에 주 소유 자연물의 처분을 허용하는 조항을 두되(합법 시장화의 통로), 기본 구조는 공공 귀속 → 허가제 → 공익적 처분 또는 보관이라는 틀을 유지한다.

2.2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입법적 확장해석

프랑스 민법(Code civil) 제716조(trésor), 이탈리아 민법전(Codice civile) 제932조, 스페인 민법(Código Civil) 제351조 등은 토지에서 발견된 보물에 대한 귀속(토지소유자와 발견자의 분배 또는 국가 귀속)을 규정한다. 특히 프랑스 민법 제716조에 따르면 “보물이란,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채로 은닉·매장된 상태에서 오로지 우연의 결과로 발견된 물건이며, 자기 토지에서 발견하면 전부, 타인 토지에서 발견하면 발견자와 토지소유자 절반씩 소유한다”고 하여 그 보물의 귀속 관례를 명시

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른 보물은 매장되고 은닉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불명이고 이를 우연하게 발견한 것이 결합된 형태로 여기에서 동산은 금전이나 귀중품 등을 의미한다.⁴⁶⁾

이탈리아 민법 제932조 역시 보물에 관한 정의 규정과 함께 그에 대한 귀속 및 문화재 특별법의 연계를 하는 규정이다, 즉 “보물이란 가치 있는 동산으로서 은닉·매장되어 있고 소유자를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물건. 자기 토지에서 발견하면 소유자에게, 타인 토지에서 우연(*solo effetto del caso*)에 의해 발견되면 토지소유자와 발견자 각 절반씩, 역사·고고·고생물·예술적 관심 대상의 물건 발견에는 특별법 규정을 따른다.”⁴⁷⁾ 고 한다. 이와는 다른 측면의 규정은 스페인 민법 제351조⁴⁸⁾로 은닉 보물은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타인의 소유지 등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 조항인 동법 제614조⁴⁹⁾에 따라야 한다. 즉 제614조는 제351조에 대한 교차참조 규정으로, 타인 소유지에

46) Article 716 La propriété d'un trésor appartient à celui qui le trouve dans son propre fonds; si le trésor est trouvé dans le fonds d'autrui, il appartient pour moitié à celui qui l'a découvert, et pour l'autre moitié au propriétaire du fonds.

Le trésor est toute chose cachée ou enfouie sur laquelle personne ne peut justifier sa propriété, et qui est découverte par le pur effet du hasard.

47) Art. 932 (Tesoro) Tesoro e' qualunque cosa mobile di pregio, nascosta o sotterrata, di cui nessuno puo' provare d'essere proprietario. Il tesoro appartiene al proprietario del fondo in cui si trova. Se il tesoro e' trovato nel fondo altrui, purché' sia stato scoperto per solo effetto del caso, spetta per meta' al proprietario del fondo e per meta' al ritrovatore. La stessa disposizione si applica se il tesoro e' scoperto in una cosa mobile altrui. Per il ritrovamento degli oggetti d'interesse storico, archeologico, paleontologico, paleontologico e artistico si osservano le disposizioni delle leggi speciali.

48) Artículo 351. El tesoro oculto pertenece al dueño del terreno en que se hallare. Sin embargo, cuando fuere hecho el descubrimiento en propiedad ajena, o del Estado, y por casualidad, la mitad se aplicará al descubridor. Si los efectos descubiertos fueren interesantes para las ciencias o las artes, podrá el Estado adquirirlos por su justo precio, que se distribuirá en conformidad a lo declarado.

49) Artículo 614.El que por casualidad descubriere un tesoro oculto en propiedad ajena tendrá el derecho que le concede el artículo 351 de este Código.

서 우연히 은닉 보물을 발견한 경우 제351조가 정하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에 따르면 타인의 소유지나 국가 소유지에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할 경우 발견자에게 절반을 분배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보물은 통상 은닉된 금전·귀중품을 전제로 하며, 자연유입 물체인 운석은 보물의 범주에 직접 포섭되기 어렵다. 다만 학설⁵⁰⁾은 ‘자연사적 가치가 큰 물건’에 대한 공익 보호 필요를 근거로, 보물 규정의 유추 적용 또는 문화재법 체계와의 연계를 제안한다. 실무에서는 (a) 동산성·선점을 원칙으로 하되 (b) 문화재·자연사 자원법을 통해 수출·양도 제한, 공공 우선매수권, 보상을 설계하는 혼합된 형태⁵¹⁾를 선호한다.

2.3 일본의 입법과 그 적용

일본 민법(民法)은 무주물의 점유취득을 동법 제239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한다. 소유자가 없는 동산은 소유의사로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아울러 유실물법이 신고·공고·보상(報償) 체계를 두고 있는데, 유실물(민법 제240조 및 유실물법), 매장물(민법 제241조), 부동산의 부합(민법 제242조) 규정이 병렬적으로 존재하여, 사안에 따라 적용 경로가 달라진다. 유실물은 공고 후 3개월 내 소유자 불명 시 습득자 취득, 매장물은 공고 후 6개월 경과한 경우, 타인 토지 내부 발견이면 토지소유자와 반씩 분배하여 귀속되고, 부합은 분리 곤란·과도한 손상 등의 경우 토지소유자 귀속으로 전환된다.

50) Max Gounelle/Matthieu Gounelle, “Meteorites: International law and regulations”, *Meteoritics & Planetary Science Vol. 54 Iss. 12*, Wiley, 2019, pp. 2887-2899; Douglas G. SCHMITT, “The law of ownership and control of meteorites”, *Meteoritics & Planetary Science Vol. 37 Iss. S12*, Wiley, 2002, p. 200; Trigo-Rodríguez, *Meteoritos, Origen, naturaleza y régimen jurídico*, Colex, 2024, pp. 207-279.

51) 스페인 Ley 16/1985; EU Reg. 2019/880; Council Reg. 116/2009; Schmitt 2004, p. 200 참조.

위 규정을 운석에 적용하는 경우 학설⁵²⁾ 실무 해석⁵³⁾의 공통분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석은 ‘자연유입의 무주의 동산’으로 파악되어 원칙적으로 민법 제239조에 따라 최초 점유자(발견자)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둘째, 예외적으로 충돌·매몰의 정도가 심하여 토양과 실질적 일체화(부합)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귀속으로 전환될 수 있다. 셋째, 오랜 기간 매장되어 기존 소유자 특징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형적 유실물과 달리 ‘매장물’ 틀(민법 제241조)의 준용 가능성이 논의되지만, 운석은 ‘우연히 떨어진 자연물’이라는 점에서 유실물·매장물과는 성격이 상이하므로 직접 적용에는 곤란해 보인다.⁵⁴⁾ 다만 민법상 귀속과 별개로, 문화재보호법은 천연기념물 등 자연사적 가치가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현상변경 허가·보존 의무·반출 제한을 규정한다. 운석이 일정한 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민법상 소유권 귀속과 병행하여 문화재보호법상 공법적 통제가 작동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주물 점유취득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석의 귀속 문제에 대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법의 핵심은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고 점유취득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운석이 토양의 내재적 구성요소로 일체화되지 않은 이상

52) Money Post, Masami Takeshita, “拾った隕石を博物館に渡さずに自分のものにした、法的に問題は?”, 29 September 2020, <<https://www.moneypost.jp/707173>>, 검색일: 2025. 10. 14; Ameblo, 作花知志, “ヤフー・ニュース「空から落ちてきた隕石は誰のもの」でコメントを担当しました”, 9 April 2013, <<https://ameblo.jp/spacelaw/-entry-11508399938.html>>, 검색일: 2025. 10. 14.

53) Mizukoshi Law Office, “拾った隕石は誰のものになるのか?”, 14 June 2024, <<https://mizukoshi.org/%E6%8B%BE%E3%81%A3%E3%81%9F%E9%9A%95%E7%9F%B3%E3%81%AF%E8%AA%B0%E3%81%AE%E3%83%A2%E3%83%8E%E3%81%AB%E3%81%AA%E3%82%8B%E3%81%AE%E3%81%8B%EF%BC%9F/>>, 검색일: 2025. 10. 14.

54) Creer Judicial Scrivener Course, “民法 第241条 【埋蔵物の発見】”, 7 January 2024, <https://www.crear-ac.co.jp/shoshi/takuitsu_minpou/minpou_0241-00>, 검색일: 2025. 10. 4; e-Gov Japan, “民法(第239条 無主物の帰属 / 第241条 埋蔵物の発見)”, <<https://laws.e-gov.go.jp/law/129AC000000089>>, 검색일: 2025. 10. 3.

동산으로 보고 발견자의 점유취득을 허용하되, 사실관계에 따라 부합·매장물·유실물의 경합을 검토하고, 공익적 가치가 크면 문화재보호법 등 공법 규율이 후단에서 결합하는 이원구조가 된다.

3. 비교분석과 시사점

스웨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독일·스위스 입법과 궤를 같이하며, 부동산 개념의 자의적 확장을 방지하였다. 이는 “외부로부터 자연적으로 유입된 물체”에 대한 점유취득의 현대적 적용을 명확히 한 점에서 유럽 사법의 일관된 경향과 조응한다.

낙하 운석의 소유권 다툼의 문제를 대륙법 체계의 범주 내에서 비교 분석하였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스웨덴 대법원의 해당 판례인 운석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이 사건 운석을 토지의 내재적 구성요소가 아닌 외부 유입 동산으로 파악하고, 토지 측 점유·인지·통제의 부재와 일체화 정도의 미약을 들어 발견자 취득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독일의 외부 유입 동산은 독일 민법 제958조의 선점의 대상이 되고 동산이 토지에 부합되면 이를 전환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개념적으로 축을 같이 한다. 즉 독일은 민법 제958조에 따른 무주물선점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와 실질적 일체화(부합)가 있으면 토지소유자 귀속으로 전환한다. 통상 판례에서는 “일체화 여부, 토지와 분리가능성, 그리고 그로 인한 손상비용”이라는 기술적 판단요소에 의존하며, 운석을 외부 유입 동산으로 보아 표면부가 단기 노출이면 발견자 취득을 긍정하는 경향이다. 스위스는 민법 제718조 무주 동산의 점유취득이라는 일반규정을 두고, 그 위에 동법 제724조인 특별규정을 얹어, 과학적 가치가 있는 무주의 자연물이나 고대유물을 발견 주(칸톤)의 소유로 귀속시킨다. 허가 없는 처분 금지, 점유취득·선의취득 배제, 반환청구 불소멸까지 규정되어 공공 보존을 강하게 지향한다. 가치가 낮은 일반 파편은

민법 제724조 요건 밖에서 제718조로 회귀할 여지가 있다.

그밖에 주요 유럽연합 회원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의 경우는 ‘보물(treasure)’ 규정이 있다. 본질적으로 보물(금전·귀중품 등 전형적 동산 상정)이라고 하는 것이 은닉 또는 매장된 것을 우연하게 발견하였으나 그것에 대하여 소유자가 불명하다는 것을 요건으로 해서 이론적 판단을 하고자 하였으나 운석처럼 자연 유입물은 직접 포섭이 어렵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사적 가치가 큰 물건에 대하여는 공익적인 보호 필요를 근거로 보물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문화재와 자연사 법제와 결합하여 공익을 보완하자는 것으로 운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이다.

독일법을 계수한 일본 역시 민법 제239조(무주 동산의 점유취득)가 출발점이다. 그리하여 동법 제242조의 부합, 제241조 매장물 및 제240조 유실물 규정을 경합적으로 검토한다. 운석은 전형적인 유실물이나 매장물과는 성격이 달라서 직접 적용엔 신중하고, 공익가치는 문화재보호법 등 공법으로 보완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운석의 동산성을 인정하면 이를 무주물의 점유취득으로 해결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V. 맺음말

스웨덴 대법원은 최근에 운석의 법적 성질과 귀속 기준을 부동산과 동산의 경계에서 판단하면서 무주물에 의한 점유취득(occupatio)을 인정한 바 있다. 여기에 공공접근권(Allemansrätten)의 삼각 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특히 스웨덴법상 처음으로 운석의 법적 귀속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로서, 부동산과 동산의 경계 및 점유취득의 현대적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이는 동 사건에 대한 스웨덴 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한 선행연구⁵⁵⁾에서 제시된 “운석은 점유취득의 대상이 되는 천체기원 물

체”라는 견해와 동일하다.

스웨덴 대법원은 운석을 “토지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동산”으로 보아 발견자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의 절대적 지위를 제한하고 과학적 발견의 자유를 보호하였다. 그러므로 운석을 토지의 내재적·영속적 구성요소가 아닌 외부유입 동산으로 보아 발견자 점유취득을 인정했다. 운석의 낙하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동산으로 낙하된 토지와 운석 사이의 물리적 결합 정도 등을 보아 그 일체화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는 점유취득의 대상이 되고 더욱이 발견자가 운석에 대한 점유 상태와 그것을 인지하여 이는 무주물선점에 의하여 발견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과 동산의 경계를 확인하고 운석의 연구와 탐사 과정에 대한 보장이라는 기능적 합목적성이 확보되었다. 발견자 귀속은 탐사·신고·표본 제공을 유도해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키지만, 동시에 투기·무단 반출 위험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판결은 사법적 판단에서 발견자에게 운석의 귀속을 보장했지만 공법적 측면에서 유통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여 발견에 대한 신고나 등록을 한 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선매수하거나 보상하는 공익을 보완하는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취지는 독일 민법과 일본 민법의 무주물선점의 법리인 사법 중심 모델과 개념적으로 합치되고, 스위스 민법의 공익 우선이라는 특별규정을 택하는 것과 같은 형태이다.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UNESCO 협약이나 EU 규정 등 국제 단계 규범은 반출입·거래의 합법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설령 발견자 취득과 같은 국내 귀속 원칙을 인정하더라도, 수출·양도 시점에 공익 통제가 작동하면 연구 접근성과 문화재 보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스웨덴 판결은 사법적 귀속을 정리함으로써 오히려 국제 거래·보험·운송·연구 협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을 제공했다.

55) 김은경/박현숙, 앞의 논문, 181쪽 이하.

우리 민법 제249조 역시 무주물 점유취득이 존재하나, 천체기원 물체에 대한 명문 규정과 등록·신고·우선매수·보상의 공법 장치는 부재하다. 비교법적 측면에 비추어 이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금번 스웨덴 낙하 운석에 대한 소유를 다룬 대법원 판례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천체기원의 물체의 법적 귀속에 대한 근대적 논리를 재구성한 전환점으로써, 향후 부동산법과 물권법 해석에 지속적인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 법도 스웨덴 대법원이 운석에 대하여 내린 판결을 참조하여 운석발견에 대한 사법적 의미와 유통가능성에 대비한 공법적 설계를 구축한다면, 특정한 가치가 있는 천체기원의 물체에 대한 과학·문화적 보전과 민간적인 합리적 우대 조치가 조화를 이루는 실효적 질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곽윤직/김재형, 물권법, 박영사, 2024.

김준호, 물권법, 법문사, 2020.

박동진, 물권법강의, 법문사, 2022.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22.

Bertil Bengtsson, *Sakrättsliga frågor i fastighetsrätten 6 uppl.*, Johanneshov, 1991.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80. Aufl.*, C.H.beck, 2021.

Prütting/Wegen/Weinreich, *BGB Kommentar 20. Auflage*, Wolters Kluwer, 2024.

Torgny Håstad, *Sakrätt avseende lös egendom 6 uppl.*, Norstedts Juridik, 2000.

Trigo-Rodríguez, *Meteoritos, Origen, naturaleza y régimen jurídico*, Colex, 2024.

2. 학술지

김은경/박현숙, “운석의 소유와 관련한 판례분석과 해당 논의에 관한 법적 소고 -스웨덴 고등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일감부동산법학 제29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181-237쪽.

Douglas G. SCHMITT, “The law of ownership and control of meteorites”, *Meteoritics & Planetary Science Vol. 37 Iss. S12*, Wiley, 2002, pp. B5-B11.

Max Gounelle/Matthieu Gounelle, “Meteorites: International law and regulations”, *Meteoritics & Planetary Science Vol. 54 Iss. 12*, Wiley, 2019, pp. 2887-2901.

3. 웹사이트

Ameblo, 作花知志, “ヤフー・ニュース 「空から落ちてきた隕石は誰のもの」でコメントを担当しました”, 9 April 2013, <<https://ameblo.jp/spacelaw/entry-11508399938.html>>, 검색일: 2025. 10. 14.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 958 Eigentumserwerb an beweglichen herrenlosen Sachen”, <https://www.gesetze-im-internet.de/bgb/_958.html>, 검색일: 2025. 10. 2.

Creer Judicial Scrivener Course, “民法 第241条 【埋藏物の発見】”, 7 January 2024, <https://www.crear-ac.co.jp/shoshi/takuitsu_minpou/minpou_0241-00>, 검색일: 2025. 10. 4.

Drei neue Schweizer Meteoriten entdeckt, “Institut für Geologie”, 18. 10. 2018, <https://www.geo.unibe.ch/ueber_uns/medien/medienmitteilungen/181002_meteoriten/index_ger.html>, 검색일: 2025. 10. 2.

e-Gov Japan, “民法(第239条 無主物の帰属 / 第241条 埋藏物の発見)”, <<https://laws.e-gov.go.jp/law/129AC0000000089>>, 검색일: 2025. 10. 3.

LTO, Philipp Feth, “Wem gehören Meteoriten?”, 29. 1. 2024, <https://www.lto.de/recht/hintergruende/h/meteorit-meteoroid-weltraum-eigentum-an-eignung-fund-schatz-schatzfund?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 10. 12.

Mizukoshi Law Office, “拾った隕石は誰のモノになるのか?”, 14 June 2024, <<https://mizukoshi.org/%E6%8B%BE%E3%81%A3%E3%81-9F%E9%9A%95%E7%9F%B3%E3%81%AF%E8%AA%B0%E3%81%AE%E3%83%A2%E3%83%8E%E3%81%AB%E3%81%AA%E3%82%8B%E3%81%AE%E3%81%8B%EF%BC%9F/>>, 검색일: 2025. 10. 14.

Money Post, Masami Takeshita, “拾った隕石を博物館に渡さずに自分の

ものにしたい、法的に問題は?”, 29 September 2020, <<https://www.moneypost.jp/707173>>, 검색일: 2025. 10. 14.

4. 기타자료

Thomas Hoeren/David Kästle-Lamparter/Philip Mayer, *Anspruch der B gegen E auf Herausgabe des Meteoritenstücks gem. § 985 BGB-Zwischenprüfungsklausur Sachenrecht/Gesetzliche Schuldverhältnisse: Der kostbare Weltraumschatz*, ZJS, 6/2024.

[Abstract]

**Analysis of the Swedish Supreme Court's
Final Judgment on Meteorite Ownership**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the Boundary Between
Real Property and Personal Property, and
Occupation–Based Acquisition–

Kim, Eun-Kyung*

Park, Hyeon-Sook**

A legal dispute over the ownership of an iron meteorite (approximately 14 kg) that fell near Enköping, Sweden in November 2020 was ultimately settled by the Supreme Court of Sweden (Case T 3007-24, August 19, 2025), following proceedings through the District Court and the Court of Appeal. The central legal issue concerned whether the meteorite, newly fell from outer space, constitutes a component of real property (*fast egendom*), or whether it should be regarded as a personal property (*lös egendom*) and subject to acquisition by occupation (*occupatio*) as a *res nullius* (ownerless object).

The District Court held that the meteorite was an ownerless personal property and recognized the finder's acquisition through occupation. The

* First Auth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Law School, Dr. iur. Prof

** Corresponding Auth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Scandinavian Languages, Ph.D. Prof

Court of Appeal reversed this decision, extending the concept of “land” (*jord*) under the Land Code (*Jordabalken*), and concluded that the meteorite should be considered part of the land, thus belonging to the landowner. However,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appellate judgment and reinstated the District Court's ruling, holding that the meteorite did not constitute an intrinsic or permanent component of the land (such as clay, gravel, or bedrock) and therefore was not included in real property. Since the landowner neither knew of nor exercised control over the meteorite, possession had not been established, and the finder's acquisition by occupation was therefore recognized.

Regally, the Supreme Court reaffirmed the boundary between real property and personal property based on the criteria of *intrinsicness* and *permanence*, and applied the classical doctrine of occupation-based acquisition to a modern context involving an object of celestial origin. The Supreme Court also clarified that the right of public access (*allemansrätten*) guarantees freedom to use nature but does not serve as a direct legal basis for determining ownership.

However, in a dissenting opinion, Chief justice Anders Eka argued that the meteorite should become part of the land immediately upon impact, thus belonging to the landowner. This view has been criticized for weakening the requirements of physical integration, permanence, and possessory control.

The decision supports finder ownership, which may strengthen incentives for exploration, reporting, and scientific research, yet it also raises concerns over speculation and unauthorized export of valuable meteorites. Accordingly, a hybrid regulatory model is proposed — combining finder rewards, a public pre-emption right, and a registration and reporting system. From an international trade perspective, clearer ownership standards enhance

predictability in cross-border transactions, insurance, transport, and research cooperation.

In comparative law, the decision aligns with the general principle of acquisition of ownerless property by possession under Germany's BGB §958, Swiss and Japanese civil laws, as well as with the continental European trend recognizing personal property status where there is no substantial attachment to the soil. Through an analysis of the decisions at each judicial level, this case illustrates the need for a balanced legal framework that reconciles scientific research incentives with public preservation interests in the emerging space age.

[Key Words] Meteorite Ownership, Real Property, Personal Property, Occupation-Based Acquisition, the Swedish Supreme Court